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0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6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태권도시설인 국기원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노후화 개선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시설 대부요율 특례의 필요성은 있음.
-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재산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특례 요율이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공유재산의 구분과 상관없이 특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 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0조(태권도시설 대부요율)</u>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해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<u>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</u>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<u>제10조 (생략)</u>	<u>제11조</u> (현행 제10조와 같음)	<u>제11조</u>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(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</u>
<u>제10조</u> (생 략)	<u>제11조</u> (현행 제10조와 같음)